

이사회운영규칙

관리번호

개정번호

개정일자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칙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권 한)

1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3.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4.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.

제 5 조 (의 장)

1.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2. 대표이사가 數人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르고 대표이사 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다.

이사회운영규칙

관리번호

개정번호

개정일자

제 6 조 (감사의 출석 등)

1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2.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이사 아닌 자의 출석)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8 조 (종 류)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2.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장소와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부의 및 보고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
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 (소집권자)

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.

제 10 조 (소집절차)

1.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24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결의방법)

1.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유·무선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.
2.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3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이사회운영규칙

관리번호

개정번호

개정일자

제 12 조 (질서유지)

1.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2. 이사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4 장 부 의 사 항

제 13 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
 - (2) 정관의 변경의 결정
 - (3)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4) 자본감소의 결의
 - (5) 영업의 중요한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, 양수, 임대 등
 - (6) 회사의 합병
 - (7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의 결정
 - (8) 이사의 선출 및 해임
 - (9) 감사의 선출
 - (10) 이사 및 감사의 보수
 - (11) 해산의 결의
 - (12) 주식배당의 결의
 - (13) 사업목적의 변경
 - (14)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총회 부의 의안
2. 주식에 관한 사항
 - (1)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 - (2) 해외 증권시장의 주권 상장
 - (3) 유상증자시 실권주식 처리
 - (4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- (5) 주권의 액면 분할 및 병합

이사회운영규칙

관리번호

개정번호

개정일자

3. 사채에 관한 사항

- (1) 일반사채의 발행
- (2) 전환사채의 발행
- (3) 교환사채의 발행
- (4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5) 신증사채의 발행

4. 투자에 관한 사항

- (1) 자본금 20%이상 상당 신규·증설 투자
- (2) 자본금 10%이상 상당 타법인 출자, 처분
- (3) 자본금 10%이상의 해외 직접투자

5. 기타 경영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임면
- (2)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
- (3) 이사의 겸업,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
- (4) 자기자본 50% 이상 상당 금액의 차입 계약 체결
- (5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6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(8)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
- (9) 자산재평가 실시
- (10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

제 14 조 (보고사항)

이사회는 별도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 5 장 위 임

제 15 조 (위 임)

이사회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이사회운영규칙

관리번호

개정번호

개정일자

제 16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1. 이사회는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① 경영위원회
 - ②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2. 각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16 조의 2 (경영위원회)

1.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대로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3. 경영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심의대상,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.

제 16 조의 3 (보상위원회)

1.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보상관련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3. 보상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심의대상,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.

제 16 조의 4 (내부거래위원회)

1.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관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3. 내부거래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심의대상,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.

이사회운영규칙

관리번호

개정번호

개정일자

제 6 장 기 타 사 항

제 17 조 (의사록)

이사회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(또는 지점)에 비치한다.

제 18 조 (간 사)

1. 이사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2.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9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